

(재)진안사랑장학재단 공고 제 2019- 1호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재)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는 진안군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학업 우수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9년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재)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01. 14.(월) ~ 03. 15.(금)

□ 교부 및 접수처

- 2019년 1월 1일 기준 보호자 또는 학생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관내 학교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2 공통 자격기준

- 2018. 01. 0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
- 1가족에서 2명 이상 장학금 지원 신청 및 수혜가능 (1가구 당 다자녀 지원 가능)
-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심사 후 하나만 최종 선발(상반기 1회 지급)

□ 제외대상

-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 학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 금액은 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

□ 이중(중복) 지원제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5(중복지원의 방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장학생 선발기준

구	분	선발기준 및 지급액
특별 장학생	고등학생	<p>□ 관내 고 신입생 선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고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 국·영·수 과목을 합한 점수 상위 10명 (2019년도 3월경 시험 실시 예정) ▪ 선발인원 : 10명 ▪ 지 급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1 ~ 3위 : 400만원 - 상위 4 ~ 6위 : 300만원 - 상위 7 ~ 10위 : 200만원 <p>□ 특별장학생 미 배출학교 신입생 선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장학생(10명) 배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 학생 1명씩 학교장 추천(관내 고 특별장학생 선발 이후 선발) ▪ 선발인원 : 4명 이내(※ 관내 5개 고등학교) ▪ 지 급 액 : 100만원
	고등학생 (관내학교 졸업생)	<p>□ 전국 우수고 신입생 선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전국 우수고에 진학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된 신입생으로 이사회에서 선발된 학생 ▪ 선발대상자 : [참고자료1]에 명시된 우수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 ▪ 지 급 액 : 300만원
	대 학 생 (관내학교 졸업생)	<p>□ 전국 우수대 신입생 선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서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과 우수지방소재 신입생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사회에서 선발된 학생 ▪ 선발대상자 : [참고자료2]에 명시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 지 급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 1,000만원 -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서울소재), 고려대(서울소재) : 500만원 -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및 우수지방소재대학교 : 300만원

구 분		선발기준 및 인원
일 반 장학생 (성 적 우수자)	대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2년제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인 자 - 수능 미 응시자 : 고등학교 3학년 내신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수능 미 응시 확인서 학교장 확인필 제출) - 재 학 생(2년제 이상): 2018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 복학생의 경우 휴학전 학년도(1년) 성적 ■ 지 급 액 : 200만원
복 지 장학생	고등학생 대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출신자, 장애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복지대상자 중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지 급 액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특 기 장학생	대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미술·체육·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자로서 재능분야에 맞는 학교에 진학한 자 ■ 지 급 액 : 200만원
해 외 장학생	대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업을 열심히 하여 해외에 위치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부성적이 B학점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외대학교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 ■ 지 급 액 : 200만원

※ 선발인원은 접수인원에 비례 또는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및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을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지원서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9. 01. 14(월) ~ 03. 15.(금)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2019년 1월 1일 기준 보호자 또는 학생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 관내학교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구 분	특별 장학생	일반 장학생	복 지 특 기	해 외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지원서 (별지2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나오게) 가족관계등록부 1부.(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 학생과 부모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 각각의 초본1부, 가족관계등록부1부 ② 학생과 부모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을 경우 : 각각의 초본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1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영수증, 합격통지서 함께 제출 - 관내학교 졸업생의 경우(특별장학생)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별지3호) 	X	X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① 고등학교 신입생 : <u>중학교 3학년</u> 성적증명서 ② 대 학 교 신입생 : 대학합격통지서 1부. 수능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u>3학년</u> 성적증명서 ※ 수능미응시자 : 고등학교 <u>3년간</u> 성적증명서 (수능 미응시 확인서 필히 제출)(별지4호) ③ 대학교 재학생·편입생 : 이전학년 성적증명서(1년간) 	○	○	X	○

구 분	특 별 장학생	일 반 장학생	복 지 특 기	해 외 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장학생 ① 해외유학 신입생 : 대학합격통지서1부, 지도교수추천서1부, 지도교수본인확인서 1부, 대학입학시험성적증명서 1부,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학교성적표 1부. 재학증명서 1부. ② 해외유학 재학생 : 지도교수추천서1부, 지도교수본인확인서 1부, 학교성적표 1부,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X	X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①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미가입자 :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③ 편부모일 경우 ·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별지5호)	○	○	○	○
▪ 신청인 서약서(별지6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실적증명서 (최근 3년 이내 도대회 이상 수상실적 및 상장 사본, 학교 행사 활동 내역, 관내 행사 활동(재능기부), 개인자격증 등) 	X	X	특 기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지정자,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족(해당부모 기본증명서) 등 등 복지대상자 증빙서류 	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학교 학적 보유자(대학생)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각의 졸업증명서 	해 당 자 (가산점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3자녀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장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인정 가능단체 확인서도 가능) 				
◆ 접수된 지원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회수 조치				

5 선발방법

-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및 경제상황 배점 기준표에 의해 구분별로 순위 결정 후 재단이사회에서 장학생 선정
 - **대학생**의 경우 **1권역과 2+3권역으로 구분 접수** 하고 성적 및 경제상황 배점기준표에 의해 권역별로 순위 결정 후 재단이사회에서 장학생 선정
 - 제1권역 : 수도권지역 대학생(서울, 경기지역 소재의 4년제 이상 대학교)
 - 제2권역 : 지방 대학생(서울 경기지역 소재 이외의 지역 4년제 이상 대학교)
 - 제3권역 : 4년제 미만 대학생(전문대학생)
 - 제4권역 : 해외대학교 재학생
- ※ 장학생 수는 권역별 접수인원에 비례하여 선정
- **복지 및 특기 장학생**은 별도 구분 접수하고 성적·경제상황 배점기준표에 의해 순위 결정 후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선정

6 평가 방식

- ▷ **심사기준 : 성적(60점) + 경제상황(40점) + 가산점(최대 15점)**
- **성적평가(60점):** 성적 배점기준표 참고 [참고자료3 참고]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을 산출양식에 의거 총 평균점수로 평가
 -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을 산출양식에 의거 과목별 단위수와 원점수 입력, 총 평균점수로 평가
 - **대학교 재학생:** 성적증명서의 이전학년 평점평균 점수로 평가
- ※ 백분율 등 환산점수 적용 불가

- **경제상황 평가(40점):** 2018년도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합산 평가

□ **가산점 적용(어느 하나에 해당이 있을 시 최대 15점 적용)**

- 관내학교 학적(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 보유학생 : 5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자녀 : 5점
- 자원봉사활동(연 60시간 이상) : 5점
 - 인정기간 : 2018. 1. 1. ~ 2018. 12. 31.까지 봉사활동시간
 - 확인서 : 자원봉사센터장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봉사활동시간 인증 가능 단체의 확인서도 가능)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① 최근 2년간 재단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 ② 성적 배점 우위자 ③ 경제상황 배점 우위자
- ④ 성적점수 우위자 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적은 자 수

7 장학금 수령 및 중단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서류를 재단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친권자가 수령한다.

- 진안사랑 장학인의 다짐서, 통장사본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 퇴학, 정학, 휴학(졸업예정자), 군입대, 유학, 해외연수, 이민, 주소 이전 ⇒ 장학금 환수

※ **2019년도 1년동안 학업 유지**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 **장학금 반납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반납**

8 선발 일정

- 장학생 선발요강 홍보 및 지원서 접수 ----- 2019. 01. 14. ~ 03. 15.
 - 군·읍·면사무소 홍보(이장회의, 각종 회의 시 홍보)
 - 교부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장학금 담당

- 장학생 접수서류 취합 ----- 2019. 03. 18. ~ 04. 19.
 - 제출처 : 진안사랑장학재단 사무처(행정지원과)
 - 서류검토(자격요건 충족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

- 장학생 선발심사 및 확정 ----- 2019. 4월말
 -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지실사
 -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장학생 확정 통지

- 장학금 지급 ----- 2019. 5월말 지급
 -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진안장학인의 다짐), 통장사본

9 문의 사항

- 주소 :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 문의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
- ☎ 063)430-2514, 2231

전국 우수고등학교

■ 과학고 (20개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대구일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울산과학고등학교,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강원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남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상과학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

■ 외 고 (31개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의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고 (4개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청심국제고등학교

■ 영재고 (4개교)

서울과학고등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 자율형사립고 (53개교)

경문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동양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상암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송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한양사대부속고,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송원고등학교, 송덕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안산동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용인의외국어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적을 평가한 후, 지정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 한합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 서울소재대학교(43개)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감리교신학대학교,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 경기대학교서울캠퍼스,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고려대학교안암캠퍼스,광운대학교,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쌍문동캠퍼스,종로캠퍼스),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삼육대학교,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서강대학교,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서울캠퍼스,서울한영대학교,성공회대학교,성균관대학교인문사회과학캠퍼스, 성신여자대학교(돈암수정캠퍼스,미아운정그린캠퍼스),세종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연세대신촌캠퍼스,이화여자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총신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케이시대학교,한국성서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한국체육대학교,한성대학교,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홍익대학교서울캠퍼스

■ 우수지방소재대학

- 4년제 지방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교육대학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전 과목 평균성적이 3등급이상이고,
수능 평균 2등급 이상인 자

성적 배점기준표

점수	학업성적 평가			
	대학교 성적		고등학교	중학교
	4.3 기준	4.5 기준	9등급	100점
60	4.30	4.50	1.01~1.25	100
58	4.23~4.29	4.43~4.49	1.26~1.50	99.9~98.0
56	4.15~4.22	4.36~4.42	1.51~1.75	97.9~96.0
54	4.07~4.14	4.28~4.35	1.76~2.00	95.9~94.0
52	3.99~4.06	4.21~4.27	2.01~2.25	93.9~92.0
50	3.91~3.98	4.13~4.20	2.26~2.50	91.9~90.0
48	3.83~3.90	4.06~4.12	2.51~2.75	89.9~88.0
46	3.75~3.82	3.98~4.05	2.76~3.00	87.9~86.0
44	3.67~3.74	3.91~3.97	3.01~3.25	85.9~84.0
42	3.59~3.66	3.83~3.90	3.26~3.50	83.9~82.0
40	3.51~3.58	3.76~3.82	3.51~3.75	81.9~80.0
38	3.43~3.50	3.68~3.75	3.76~4.00	79.9~78.0
36	3.35~3.42	3.61~3.67	4.01~4.25	77.9~76.0
34	3.27~3.34	3.53~3.60	4.26~4.50	75.9~74.0
32	3.19~3.26	3.46~3.52	4.51~4.75	73.9~72.0
30	3.11~3.18	3.38~3.45	4.76~5.00	71.9~70.0
28	3.03~3.10	3.31~3.37	5.01~5.25	69.9~68.0
26	2.95~3.02	3.23~3.30	5.26~5.50	67.9~66.0
24	2.87~2.94	3.16~3.22	5.51~5.75	65.9~64.0
22	2.79~2.86	3.08~3.15	5.76~6.00	63.9~62.0
20	2.70~2.78	3.00~3.07	6.01~6.25	61.9~60.0
▶ 2점씩 차등배점	▶ 4.3-2.7 = 1.6 ▶ 1.6÷20=0.08점 간격으로 구분	▶ 4.5-3.0=1.5 ▶ 1.5÷20=0.075점 간격으로 구분	▶ 2점 간격으로 구분	

※ 중학교 성적환산 방법

- (학점점수 + 학점점수 +.....) ÷ 과목수
 (수 = 95점, 우 = 85점, 미 = 75점, 양 = 65점, 가 = 55점)

※ 고등학교 성적환산 방법

- (이수단위 × 등급점수 +.....) ÷ 총 이수단위(석차 등급 없는 과목 제외)

※ 성적적용 범위

- 고등학교 신입생 : 중학교 3학년 성적(1년)
- 대 학 교 신입생 : 수능성적표, 고등학교 3학년 성적(3년·1년)
- 대 학 교 재학생 : 대학교 직전학년 성적(1년)

※ 성적 기준표

4.5 / A+ / 97~100	3.3 / BO / 84~86	2.0 / C- / 70~73
4.3 / A0 / 94~96	3.0 / B- / 80~83	1.5 / D+ / 67~69
4.0 / A- / 90~93	2.5 / C+ / 77~79	1.3~1.0 / D / 60~69
3.5 / B+ / 87~89	2.3 / CO / 74~76	0 / F / 59점이하

경제상황 배점기준표

금 액	배 점	금 액	배 점	비 고
국민기초수급자	40	9만원 미만	28	※ 2018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차상위 계층	38	10만원 미만	27	
5천원 미만	37	11만원 미만	26	
1만원 미만	36	12만원 미만	25	
2만원 미만	35	13만원 미만	24	
3만원 미만	34	14만원 미만	23	
4만원 미만	33	15만원 미만	22	
5만원 미만	32	20만원 미만	21	
6만원 미만	31	25만원 미만	20	
7만원 미만	30	30만원 미만	19	
8만원 미만	29	30만원 이상	18	

※ 금액 : 2018년 1월~12월까지 납부한 부·모의 건강보험료의 월 평균액

【 가 산 점 】 : 최대 15점

- 관내 학교 학적 보유자(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 : 5점
-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자녀 : 5점
- 자원봉사활동(연 60시간 이상) : 5점

장학생 지원서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복지장학생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교명	학교		학부	학년	반
	휴대전화		e-mail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 인적사항	보호자		직업 (근무처)		관계	
	전화	전화 :		휴대폰 :		
	주소 (도로명)	(우편번호)				
본인은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의 장학생이 되고자 불임과 같이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합니다.						
2019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위 학생을 귀 재단의 년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음·면장 직인						
(재)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출신 고 교 :

대 학 교 :

학 과 :

위 학생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고등학교장 (직인)

진안사랑장학재단 귀하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진안사랑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학 자 금 종 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출</td> <td> (예시) ■ 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학금</td> <td> (예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학비 지원</td> <td>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td> </tr> </table>	대출	(예시) ■ 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장학금	(예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대출	(예시) ■ 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장학금	(예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I·II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